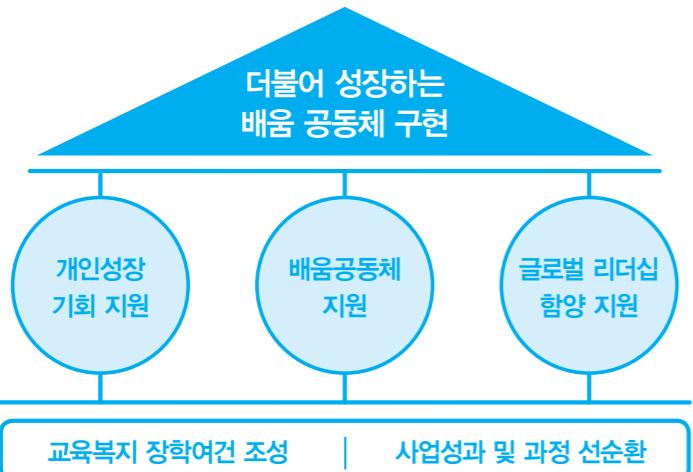


## 재단 소개

\* 비전



\* 사업영역

### 멘토링 꿈장학 사업

꿈과 가능성이 있는 청소년들이 멘토의  
교육적·정서적 지지를 받으면서 자신의  
꿈을 찾고 성장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 
지원하는 사업

- 꿈장학  
꿈장학 / SOS장학
- 분야별 우수 장학  
과학·예술·체육 우수 장학 / 드림클래스-꿈장학
- 꿈키움장학

### 리더육성 장학사업

꿈장학을 통해 성장한 우수 인재를 적극  
적으로 발굴하여 차세대 리더로 성장할  
수 있도록 대학 장학금 및 교육프로그램을  
지원하는 사업

- 대학희망장학
- 희망키움장학
- 희망나눔장학

### 배움터 교육지원 사업

교육자원이 부족한 아동·청소년들을 위한  
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지원  
하는 사업

- 지역형 교육복지사업
- 전문형 교육복지사업

### 글로벌 장학사업

개발도상국에서 우리나라로 유학 온 우수  
인재와 한인 후손을 포함한 개발도상국  
현지 빈곤 아동·청소년의 교육을 지원  
하는 사업

- 글로벌 국내장학
- 글로벌 국외장학

## 인재상

도전 정신과 긍정적인 자세로  
자신의 꿈을 적극적으로 실현하고  
공동체를 위해서  
나눔을 실천하는 사람

[www.sdream.or.kr](http://www.sdream.or.kr)

2020년  
**꿈장학 신청 안내**

신청기간

2020.3.31(화) ~ 4.29(수) 18:00까지

# 멘토링 꿈장학

## \* 지원목적 및 개요

꿈과 가능성이 있는 청소년들이 멘토 선생님의 교육적·정서적 지지를 받으면서 주도적으로 자신의 꿈을 찾고 성장할 수 있도록 장학생을 선발하여 지원함.

### 왜 멘토링 꿈장학인가?

우리 재단은 장학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이 멘토와의 관계 속에서 꿈을 찾고 키우며 배움을 얻고 성장할 수 있도록 '멘토 선생님과 함께 하는 꿈장학'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

## \* 지원대상

### 저소득층 가정의 청소년 (중학교 2학년 ~ 고등학교 3학년)

\* 학비 면제 또는 타 장학금으로 학비 지원을 받는 학생의 경우에도 경제적 어려움의 정도에 따라 꿈장학금 신청이 가능합니다.

## \* 지원내용

학교급에 따라 12개월 동안의 장학금을 다음과 같이 차등 지원함.

- 중 학 生 : 1,800,000원 (월 15만원 기준)
- 고등학생 : 2,400,000원 (월 20만원 기준)

\* 장학금이 반드시 장학생의 학습과 성장을 위해 사용되도록 지도하기 위해 [멘토를 통해 장학금을 자급합니다. \(멘토 명의의 통장계좌로 입금\)](#)

\* 꿈장학생으로 선정된 학생은 재단 소정의 심의과정을 통해 장학생으로서 열심히 노력하고 재단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매년 재신청을 통해 지속 지원할 계획입니다.

# 2020년 꿈장학 신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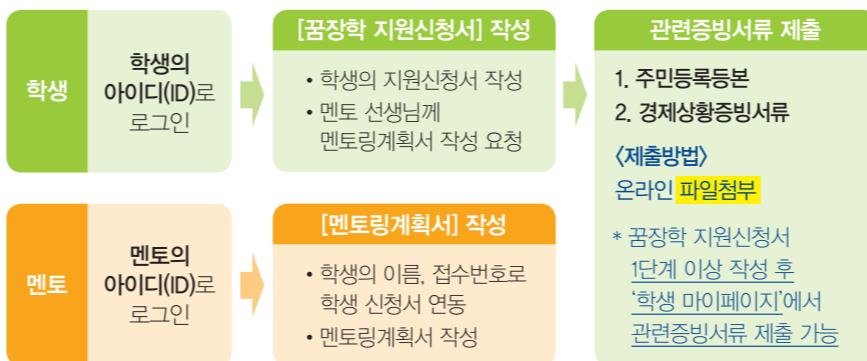
## \* 신청기간

2020년 3월 31일(화) ~ 4월 29일(수) 18:00까지

\* 원활한 접수를 위해 마감이 임박하기 전에 신청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.

## \* 신청방법

재단 홈페이지 ([www.sdream.or.kr](http://www.sdream.or.kr))



## \* 최종 선정자 발표

2020년 5월 29일(금) 이후, 재단 홈페이지 공지 예정

## \* 문의

- 전화번호 : (02) 727-5400~5401
- 홈페이지 : [정보마당] - [Q&A]

### 꿈장학 멘토

꿈장학 멘토는 **장학기간(2020.5~2021.2) 동안 학교에 재직하는 교원 또는 학교사회복지사** 중 장학생과 주기적인 만남이 가능하고, 가까이에서 장학생의 성장과정을 이끌어 줄 수 있는 선생님을 의미함.

- \* 학생의 부모, 형제, 친인척 또는 보호자는 꿈장학 멘토가 될 수 없음.
- \* 한 명의 멘토는 한 명의 장학생을 지원할 수 있음.

# 증빙서류 제출

## \* 제출방법

온라인 지원신청서 1단계 이상 작성 후 '마이페이지 – 장학신청 – 신청현황'에서 파일첨부로 제출함.

## \* 제출서류

- 주민등록등본 1부 ([세대주와의 관계 명시](#))
- 경제상황증빙서류 : '법정저소득층' 또는 '기타 저소득층(차차상위 등)' 중 본인에게 해당하는 서류  
\*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제출 서류에는 생년월일만 보이도록 함 (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).

법정저소득층 : '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'에 해당하는 경우

\* 아래 1~7 서류 중 1개의 서류만 제출

증명서	발급기관
1.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	• 주민자치센터
2. 한부모가족 증명서	• 시·군·구청 민원실
3. 자활근로자 확인서	
4. 차상위계층 확인서	
5. 사회보장급여 통지서(적합 또는 변경만 해당)	
6.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	• 국민건강보험공단
7. 2019년도 교육비자원 대상자 확인서 <small>* 2019년도 초·중·고 학생 교육비자원에 따라 교육비자원을 받은 학생에 한하여 재단 서식을 출력하여 소속 학교장 직인 날인 후 제출</small>	• 소속 학교

기타 저소득층 : '법정저소득층'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

\* 아래 1~3 서류 모두 제출

증명서	발급기관
1. 부모(보호자)의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<small>* 건강보험 자격확인서의 자격확인내역에 보호자, 학생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. *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는 인정되지 않음.</small>	
2. 부모(보호자)의 2020년도 건강·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<small>* 부모(보호자)가 각각 다른 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 부모(보호자) 모두의 건강보험 자격확인서와 건강·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* 건강보험 자격확인서의 '증번호'와 건강·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의 '납부자번호'가 일치하여야 함.</small>	• 국민건강보험공단
3. 부모(보호자) 모두의 2019년도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<small>* 부모(보호자) 각각의 재산세(주택, 토지, 건물) 과세 정보(금액)가 표시된 서류를 제출함. * 과세 사실이 없는 경우, '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' 상에 '과세사실 없음'으로 기재되어 발급됨. * 납세증명서, 지방세 납세 증명서는 인정되지 않음.</small>	과세 물건이 있는 지역의 • 주민자치센터 • 시·군·구청 민원실

▶ 2020년 1월 1일 이후에 발급받은 서류 원본만 인정합니다.

▶ 지원신청서에 기재한 내용과 관련 증빙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,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
▶ 위에 제시된 서류 외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.